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5호서식] <개정 2021. 10. 28.>

(앞쪽)

[ ] 국고보조금등
[ ] 공사부담금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
[ ] 보험차익

사업연도		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
1.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

① 보조금 수령액	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					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 (MIN ①, ⑤)	손금산입액 조정		
	② 계정과목		③ 취득한 자산가액	④ 취득할 자산가액	⑤ 계 (③+④)		⑦ 용인한도액 (⑦=⑥)	⑧ 회사계상액	⑨ 한도초과액 (⑧-⑦)
	과목명	코드							
	계								

2.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

⑩ 공사부담금 가액	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지급받은 자산가액						손금산입액 조정		
	⑪ 계정과목		⑫ 취득한 자산가액	⑬ 취득할 자산가액	⑭ 지급받은 자산가액	⑮ 계 (⑫+⑬+⑭)	⑯ 용인한도액 (⑯=⑮)	⑰ 회사계상액	⑱ 한도초과액 (⑰-⑯)
	과목명	코드							
	계								

3.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

보험차익계산			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					㉖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 [MIN ㉑,(㉕-⑳)]	손금산입액 조정		
⑲ 보험금	⑳ 멸실손괴 자산가액	㉑ 보험차익 (⑲-⑳)	㉒ 계정과목		㉓ 대체한 자산가액	㉔ 대체할 자산가액	㉕ 계 (㉓+㉔)		㉗ 용인한도액 (㉗=㉖)	㉘ 회사계상액	㉙ 한도초과액 (㉘-㉗)
			과목명	코드							
			계								

4.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

㉚ 구분 코드	㉛ 손금산입 사업연도	㉜ 원래 손금산입 기준액	㉝ 원래 손금 산입액	㉞ 전기이월계 획서 제출금액	㉟ 사용액	㊱ 미사용액 (㉞-㉟)	㊲ 익금 산입액 (㉝×㊱/㉜)	비 고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계		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"1.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손금산입액 조정"란 중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란에는 ⑤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계와 ① 보조금수령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

2. "2.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"란 중 ⑮ 계란에는 금전・자재로서 취득한 자산가액(⑫) 및 취득할 자산가액(⑬)과 지급받은 자산가액(⑭)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3. "3.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 손금산입액 조정"란 중 ㉖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란에는 ㉕ 대체한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 계에서 ⑳ 멸실손괴 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㉑ 보험차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
4.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계정과목란(②, ⑪, ㉒)은 "표준재무상태표[별지 제3호의2서식(1),(3)]의 계정과목명과 코드를 적습니다.

5.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계산 시 ④, ⑬, ㉔란에는 각 취득 또는 대체할 자산가액은 사용계획서 제출금액으로 합니다.

6. "4.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조정"란 중 각 란에는 사용계획서 제출에 의한 손금산입액 중 기한 내 미사용 또는 해산 등에 의한 익금산입액을 아래 구분코드(㉚)에 따라 계산합니다.

구분	국고보조금	공사부담금	보험차익
코드	1	2	3

7. ㉜ 원래 손금산입기준액란은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금액 ⑥, ⑮, ㉖란의 각 금액을 적고 ㉝ 원래 손금산입액란은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 ⑧, ⑰, ㉘란의 각 금액을 적되, 원래 한도초과액은 제외합니다.

8. ㉞ 전기이월계획서 제출금액란에는 원래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기준액 계산에 포함된 취득할 또는 대체할 가액(④, ⑬, ㉔)을 적습니다.

9. 한도초과액(⑨, ⑱, ㉙)란의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액(㊲)란의 금액은 익금산입합니다.